대학원 학칙 중 개정 학칙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가. 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편제 및 정원 조정에 대한 편제조정위원회 심의 및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일반대학원 지능형반도체학과 신설 및 특수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학과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9조제1항 별표1, 별표3)

1) 일반대학원 지능형반도체학과 신설

계열	학과명	학위과정	비고
공학	지능형반도체학과	석사학위	• 입학정원: 26명 • 학위명: 이/공학석사
		박사학위	• 입학정원: 13명 • 학위명: 이/공학박사

2)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학과 개편

변경 전		변경 후	
학과 및 전공	정원	학과 및 전공	정원
임상헬스케어학과 1. 임상약학전공 2. 임상영양학전공 3. 바이오융합규제과학전공	64명	임상약학과*	20명
		임상헬스케어학과 1. 임상영양학전공 2. 바이오융합규제과학전공	44명
보건학과 1. 보건정책및관리전공 2. 융합바이오헬스전공		보건학과 1. 보건정책및관리전공 2. 융합바이오헬스전공	

*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함

나.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른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 운영 근거를 반영함 (제3조제3항 신설)

다.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9조제4항)

구분	내용
수업연한	4학기(2년)
재학연한	입학으로부터 7년 이내 (휴학 기간 포함)
학기당 취득학점	9학점
수료기준	1. 수업연한(4학기) 이상 등록 2. 수료학점: 30학점(전공 12학점 + 공통 6학점) 3. 성적기준: 총 평균평점 3.0 이상
졸업기준	종합시험 합격

라.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호스피스 전문과정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 (제22조제1항)

2. 개정 학칙

대학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첨부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대학원에는 온라인 교과과정 이수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첨부와 같이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을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30학점”을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30학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 호스피스전문과정은 12학점까지, 그 외 전공은 9학점까지”를 “임상약학과는 9학점까지, 그 외 전공은 전공주임교수의 승

인이 있을 때에 9학점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첨부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역번역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통역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을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임상약학과는 제외)”로 한다.

부칙(2023. 5. 12.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헬스케어학과 임상약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헬스케어학과 임상약학전공	약학석사(임상약학)

대학원 학칙 중 개정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구	신	개정사유및내용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에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생략)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별표 1……별표 3…… ② (현행과 같음)	*일반대학원 지능형 반도체학과 신설 및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학과 개편사항 반영
<신 설>	③ 각 대학원에는 온라인 교과과정 이수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근거 마련
제4조(학부ㆍ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④ (생략)	제4조(학부ㆍ학과ㆍ전공 및 입학정원) ① ……별표 1……별표 3…… ②~④ (현행과 같음)	*일반대학원 지능형 반도체학과 신설 및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학과 개편사항 반영
제19조(수업연한ㆍ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하며,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주간) 석사학위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학기, 경영전문대학원(주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학기, 각 특수대학원(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제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 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교육대학원 계절제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②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 학칙 제47조의4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제19조(수업연한ㆍ재학연한) ① ……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② ……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구	신	개정사유및내용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제2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유로 인한 단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각 대학원의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논문제출연한(제29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대체 또는 면제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석사학위 취득 요건 구비 연한)과 같다.	…… ③ ……	
제21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통합과정으로 입학하거나 전환한 학생이 입학 후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 국제학과는 38학점, 한국학과는 33학점, 통역번역대학원은 44학점, 경영전문대학원은 45학점, 법학전문대학원은 90학점, 교육대학원은 27학점, 디자인대학원·공연예술대학원·임상치의학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30학점(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는 26학점), 신학대학원은 33학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은 36학점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30학점으로 한다. ④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제21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 ②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30학점…… ③ …… ④ ……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구	신	개정사유및내용
제2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정책과학대학원·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학생은 6학점까지(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 호스피스전문과정은 12학점까지, 그 외 전공은 9학점까지), 임상치의학대학원의 학생은 11학점(전공임상실습 포함)까지, 디자인대학원·신학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학생은 9학점까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14학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21학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15학점까지, 공연예술대학원 학생은 1년에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대학원의 학생은 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습을 이수하는 학기에 한하여 별도로 4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은 학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원생이 최대 3학점까지 학점을 추가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연구생은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 전문대학원의 학생이 총장이 정하는 전문분야 실습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2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 …… …… …… ……임상약학과는 9학점까지, 그 외 전공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 9학점까지…… …… …… …… …… ……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⑤ …… …… ……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호스피스 전문과정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	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 ……	

구	신	개정사유및내용
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학위수여요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별표 1…별표 3……	*일반대학원 지능형 반도체학과 신설 및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학과 개편사항 반영
② 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에 준하는 학점을 추가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을 승인받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	
③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3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	
④ 통역번역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종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④ 통역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약학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⑤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평균성적 3.0 이상인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⑤ ……	
⑥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신학대학원 및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	
⑦ 사회복지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및 임상치의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⑦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임상약학과는 제외)……	*임상약학과의 졸업요건을 달리 정함을 명시
⑧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하	⑧ ……	

구	신	개정사유및내용
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 또는 렉처리사이틀을 통과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⑨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합격한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석사학위청구포트폴리오의 제출에 갈음하여 교과목 3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⑩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⑨ …… ⑩ …… ⑪ …… 부칙(2023. 5. 12. 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학칙 시행 당시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헬스케어학과 임상약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학과 또는 전공 / 학위종별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 임상헬스케어학과 임상약학전공 / 약학석사(임상약학)	

구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부ㆍ학과,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2023학년도)(제3조, 제4조 및 제29조 관련)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 종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 종별	입학 정원
공학 계열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전 자 전 기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화 공 신 소 재 공 학 과 건 축 학 과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환 경 공 학 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신 설>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건축학석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신 설>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전 자 전 기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화 공 신 소 재 공 학 과 건 축 학 과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환 경 공 학 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신 설>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건축학박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신 설>	
총계	68학(부)과 16학과간 협동과정 24학연산 협동과정		1,119	68학(부)과 13학과간 협동과정 23학연산 협동과정		393

[별표3]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ㆍ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2023학년도)(제3조,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 바이오 헬스 대학원	<신 설> 임상헬스케어학과 1. 임상약학전공 2. 임상영양학전공 3. 바이오융합규제과학전공 보건학과 1. 보건정책및관리전공 2. 융합바이오헬스전공	<신 설> 약학석사(임상약학) 영양학석사(임상영양학) 이학석사(바이오융합규제과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및관리) 보건학석사(융합바이오헬스)	64

신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부ㆍ학과,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2023학년도)(제3조, 제4조 및 제29조 관련)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 종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 종별	입학 정원
공학 계열	…… …… …… …… …… …… …… …… …… 지능형반도체학과**	…… …… …… …… …… …… …… …… …… 이/공학석사		…… …… …… …… …… …… …… …… …… 지능형반도체학과**	…… …… …… …… …… …… …… …… …… 이/공학박사	
총계	69…… …… ……		1,145	69…… …… ……		406

**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에 따른 증원 정원을 포함함(지능형반도체학과(결손인원) 석사 26명(증원), 박사 13명(증원))

[별표3]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ㆍ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2023학년도)(제3조,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 바이오 헬스 대학원	임상약학과* 1. 임상약학전공	약학석사(임상약학)	20
	…… <삭제> 1. …… 2. …… …… 1. …… 2. ……	<삭제> …… …… …… ……	44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함